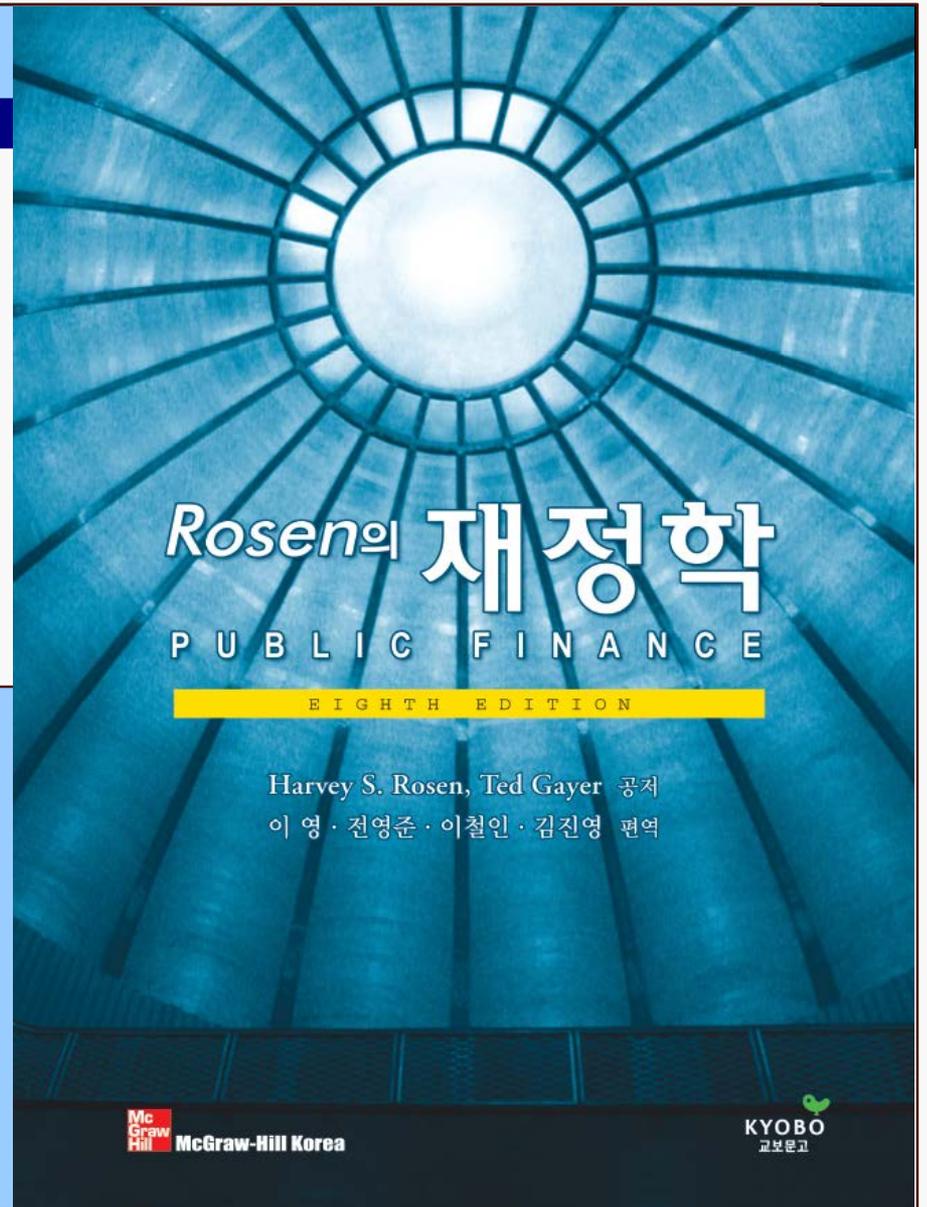


제17장

개인소득세



조세의 분류

구분	내용
국세와 지방세	과세권 주체에 따른 분류 ◆ 국세: 중앙정부 vs . 지방세: 지방정부
내국세와 관세	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 국경 내의 거래인지에 따른 분류 ◆ 내국세: 국경 내 거래 vs. 관세: 국경을 통한 거래
인세와 물세	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지에 따른 분류 ◆ 인세: 소득세 vs . 물세: 소비세, 재산세 등
보통세와 목적세	세수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른 분류 ◆ 보통세: 일반회계 세원 ◆ 목적세: 특별회계 세원(예: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)
증가세와 종량세	과세대상을 측정하는 단위에 따른 분류 ◆ 증가세: 화폐단위로 측정 ◆ 종량세: 종량, 용량, 건수, 인원 등 예: 주세의 주정(㎍), 개별소비세 경마장 입장행위(1인1회 입장시)
독립세와 부가세	독립된 세원의 존재여부에 따른 분류 - 부가세: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예: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등

조세의 분류

소득과세	재산과세	소비과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세 • 법인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속세 • 증여세 • 종합부동산세 • 인지세 • 농어촌특별세 (증권거래세, 종합부동산세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가가치세 • 개별소비세 •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• 주세 • 증권거래세 • 관세 • 농어촌특별세 (개별소비세, 관세 감면분)

국세 14개

지방세 11개		
소득과세	재산과세	소비과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소득세 • 주민세 (종업원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득세 • 등록면허세 • 재산세 • 주민세(재산분) • 자동차세(소유분) • 지방교육세(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분) • 지역자원시설세 (특정부동산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레저세 • 지방소비세 • 담배소비세 • 자동차세(주행분) • 지방교육세(레저세, 담배소비세분) • 지역자원시설세 (특정자원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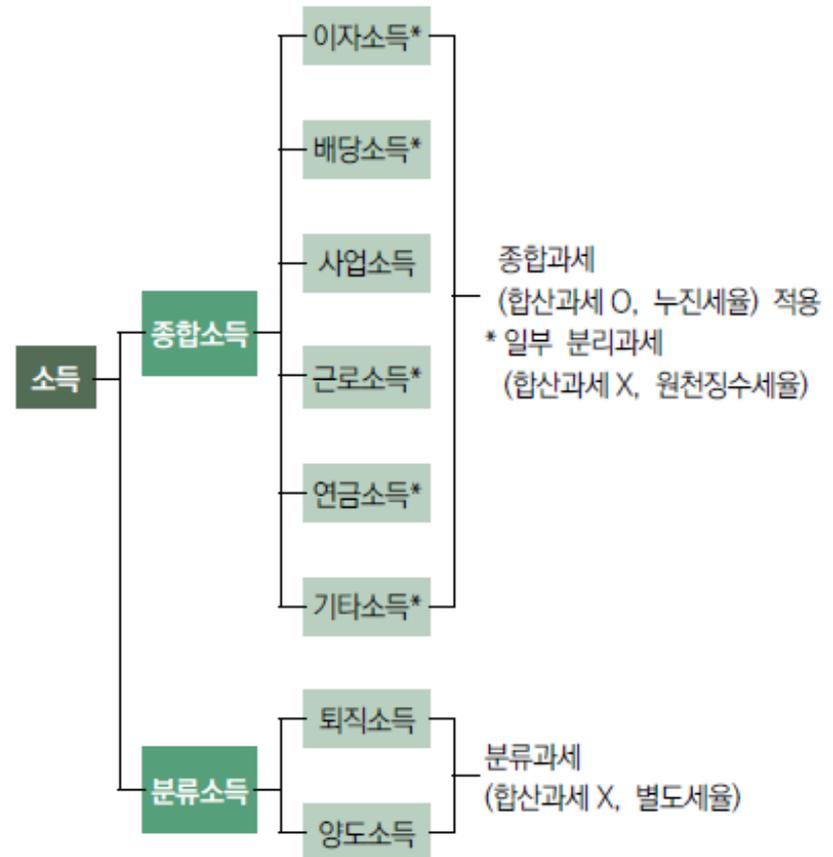
17.1 한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구조

- 한국의 중앙정부 총 국세수입 293조원의 28.5%인 83.6조원이 소득세로 조달
- 한국 개인소득세의 4가지 특징
 1. 열거주의: 과세소득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을 원칙(우리나라, 독일, 영국) * 포괄주의(미국, 일본)
 2. 종합소득세제: 일시적 성격의 퇴직소득, 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소득을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 * 분류소득세제
 3. 개인을 단위로 하여 과세
 4. 원천징수(이자, 배당, 근로, 기타), 신고납부

과세체계

● 소득세법상 열거된 사업·근로·이자 등 8가지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, 일부 분류과세

- 종합과세: 과세기간 중 발생소득을 합산, 누진세율 적용
- * 분리과세: 일부 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
 - ①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4% ②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4%
 - ③ 의료목적 등 연금소득 3~5% ④ 복권당첨금 등 20%/30% 등
- 분류과세: 소득이 장기간 집적·형성된 점을 감안, 별도 과세



주: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

소득세제 변화

● 소득세제

- 공평과세 실현(종합과세제도 도입)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(2008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)에 맞춰 시기별로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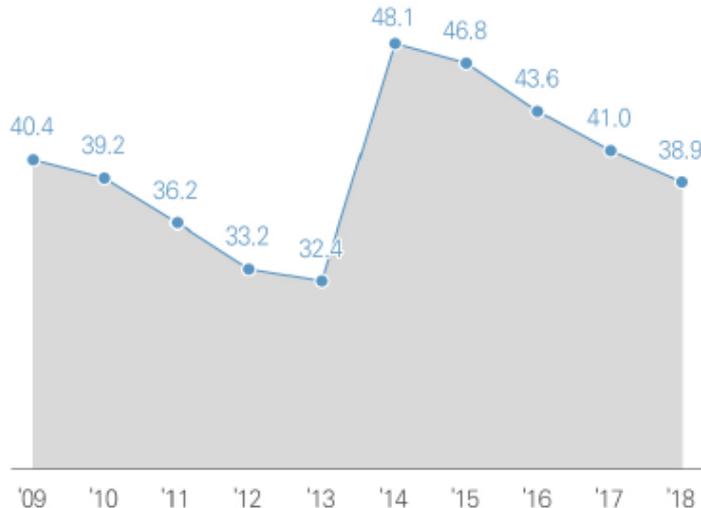
과세체계

결정세액

• 결정세액 = 과세표준 × 소득세율 - (세액공제 + 세액감면)

근로소득 면세자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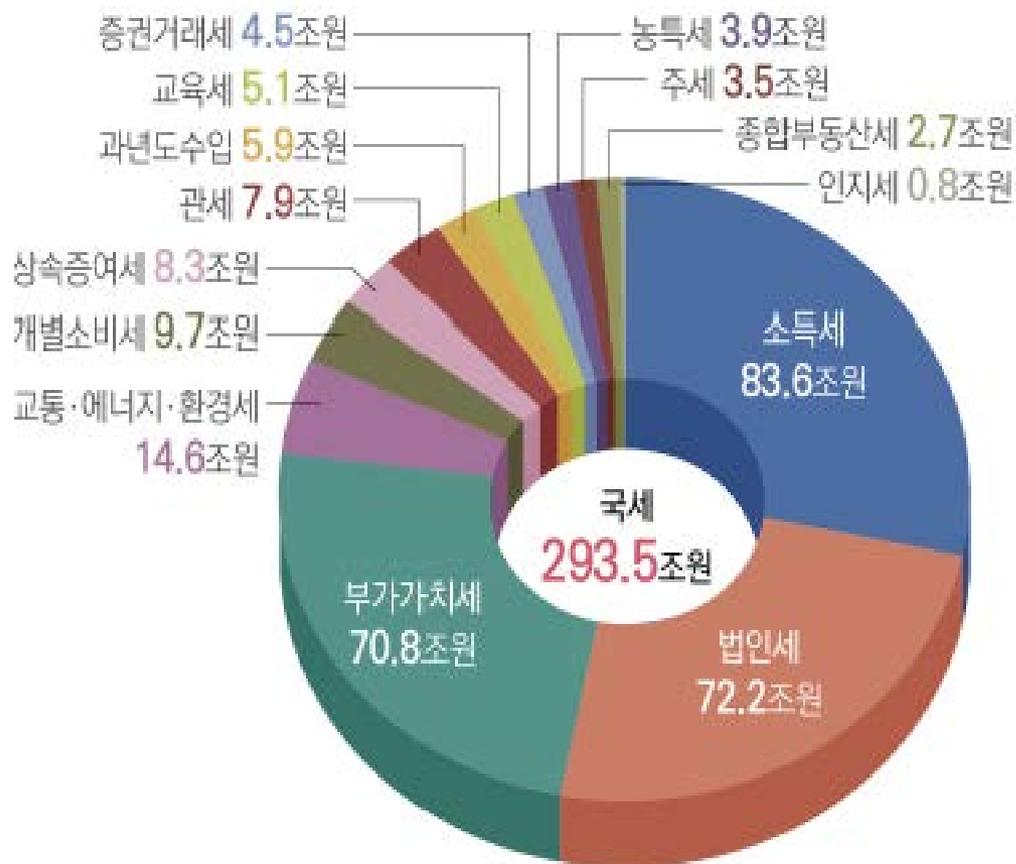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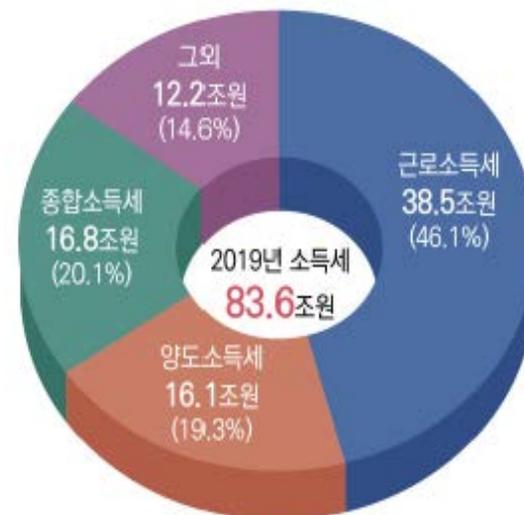
* 크라우드 데이터는 크라우드티즈 내의 다양한 비공식/비공인 데이터입니다.

종합소득금액 ¹⁾	퇴직소득금액 ²⁾	양도소득금액 ³⁾
(-)종합소득공제	(-)퇴직소득공제	(-)양도소득기본공제
= 종합소득 과세표준	= 퇴직소득 과세표준 ⁴⁾	= 양도소득 과세표준
× 기본세율	× 기본세율 (연분연승법 ⁵⁾ 적용)	× 양도소득 세율
= 종합소득 산출세액	= 퇴직소득 산출세액	= 양도소득 산출세액
(-) 세액공제		(-) 세액공제
(-) 세액감면		(-) 세액감면
= 종합소득 결정세액	= 퇴직소득 결정세액	= 양도소득 결정세액

17.1 우리나라 국세 수입 구조(2019)



소득별 세입



* 그외 항목은 원천징수된 이자·배당·사업·기타·퇴직 소득세가 포함

그림 17.1 한국의 개인 소득세 산정 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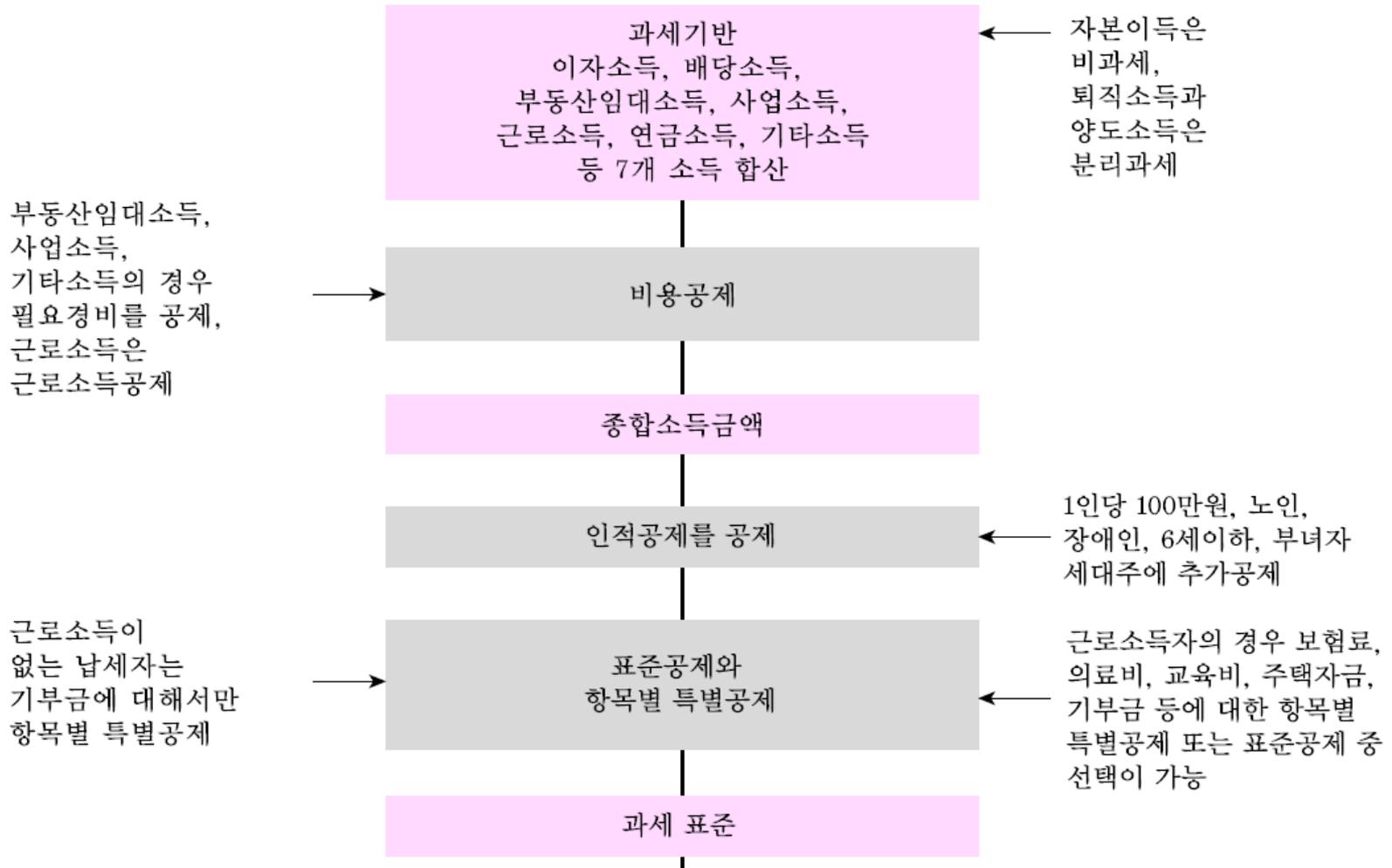


그림 17.1 한국의 개인 소득세 산정 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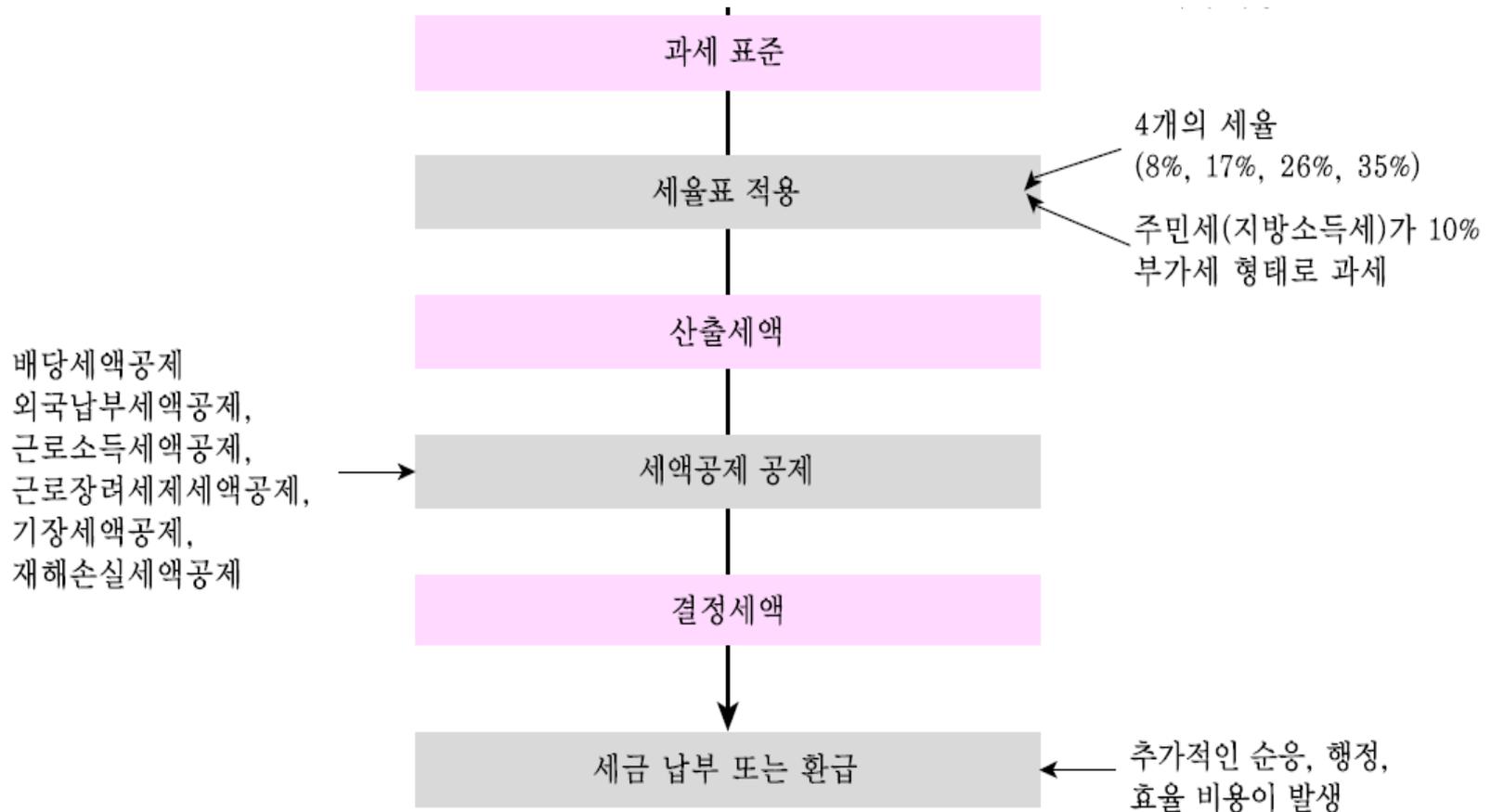


그림 17.1 한국의 개인 소득세 산정 (3)

과 세 표 준	세 율
1천2백만원 이하	6%
1천2백만원 초과~4천6백만원 이하	15%
4천6백만원 초과~8천8백만원 이하	24%
8천8백만원 초과	35%

● (소득세 세율) 7개 과세표준 구간, 초과누진세율

(단위: %)

과세표준 구간	현 행
0 ~ 1,200만원	6
1,200 ~ 4,600만원	15
4,600 ~ 8,800만원	24
8,800만원 ~1.5억원	35
1.5~3억원	38
3~5억원	40
5억원 초과	42

17.3 소득정의: Haig-Simons Income

- H-S 소득 정의(포괄적인 소득정의)
 - 개인의 소비력(power to consume) 순증가의 화폐가치
[소비측면]= 실제 소비 + (결과된) 부의 순증가분
[소득측면]= 소득 - 필요경비+부에서 발생한 자본이득
 - 부의 감소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소비
 - 현재 또는 미래 (소비 실제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)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수령한 모든 소득
 - 소득 획득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

17.3 소득정의 - H-S 소득에 포함된 항목들

- 전형적인 소득 항목들은 당연히 포함
 - 임금과 봉급, 사업이윤, 임대료, 특허·저작권 사용료, 배당금 등

- 이에 추가하여 다음의 항목들도 포함
 - 연금과 보험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
 - 이전소득
 - 사회보장 퇴직 연금 급여, 실업보험 급여, 복지 급여
 - 지본이득: 실현 또는 미실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
 - 현물소득: 귀속 임대료

17.3 소득정의 - H-S 소득 정의의 문제점

- 소득 획득 필요경비와 소비지출간의 구분이 어려움
- 자본이득/자본손실은 측정하기 매우 어려움
- 내구재로부터 발생한 귀속소득의 측정이 어려움
- 현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음

17.3 소득정의 - H-S 소득 정의의 평가

- H-S 기준은 종종 정책입안자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취급됨
 - 소득을 가능한 한 넓게 정의하고 모든 원천의 소득에 대해서 동일률의 과세: 중립성
 1. **공정성**: 수평적 형평성 개념을 만족
 - 납세자의 소득능력이 다를 경우 H-S기준이 효용 측면에서는 불공정할 수 있음.
 2. **효율성**: 모든 종류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행위를 왜곡시키지 않음
 - HS기준을 신성시할 필요는 없으며, 이탈하는 경우 이것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함.

17.4 비과세 화폐소득

- 지방채권 이자 (미국에서만)
- 일부 배당금: 한국은 세액공제, 미국은 낮은 세율적용
- 자본 이득
- 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
- 일부 저축
 - 한국: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불입액, 주택마련저축 불입액, 일부 퇴직 저축상품 불입액
 - 미국: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(IRA), Roth IRA, 401(k) plan, Keogh plan, Education savings account
- 증여와 상속

자본이득세에 대한 평가

- 낮은 자본이득 과세가 H-S 기준에서 합리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, 최적조세이론 하에서도 일반적으로 합리화되지 못함
- 다른 근거
 - 정규소득이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이득
 - 소비 억제라는 희생이 필요
 - 자본 축적과 위험감수를 유도
 - 물가상승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유효세율이 높아짐을 상쇄시키기 위한 자본이득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필요

17.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

- 인적 공제 (exemption)
 - 가족구성원 인별로 공제 가능
 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
 - 노인, 장애인, 6세 이하, 부녀자세대주 추가 공제
 -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출산장려 목적으로 폐지되고, 반대로 다자녀 추가 공제가 도입
- 인적 공제의 근거
 - 자녀로 인한 지불능력 감소를 반영:
 - 재량적 vs. 비재량적 지출
 -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감면

17.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– 계속

- 특별 공제 (deduction)
 - 특별공제는
 - 항목별 금액의 합산(항목별 특별공제) 또는
 - 일정액(표준공제)의 형태
 -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이 가능.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
- 특별공제와 상대가격 변화
 - $P_Z \rightarrow (1-t)P_Z$

17.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– 계속

□ 주요 특별공제 항목

- 의료 비용
- 지방 소득세와 지방 재산세 납부액(한국에서는 아니고. 미국에서만)
- 어떤 이자 비용
 - 신용카드 대출금 이자, 자동차 할부 이자 등은 공제되지 않음
 - 미국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학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지불이 \$2,500까지 공제
 - 미국에서는 금융자산 구입을 위해 차입에 대한 이자도 한도 내에서 공제
 - 모기지 이자 공제. 한국에서는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(1주택에 한함)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(연 1,000만원 한도)이 공제
 - 이러한 이자 비용 공제가 합당한 것인가? 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용 공제는 합당. 소비자의 경우는?

17.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– 계속

○ 조세 차익거래

- 일부 자산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이자비용의 소득공제라는 조세 규정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
- 고소득자가 특히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.

○ 기부금

- 효과: Greene and McClelland[2001]에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0.5임. 이는 보조금이 지급됨을 의미.
- 세제 혜택의 기부금 장려 효과는 강하게 존재. 다만, 1보다 작은 탄력성은 기부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.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?

조세 차익거래(tax arbitrage)

35%의 한계세율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지방채를 구입한다고 하자.

이 사람은 은행에서 \$1,000을 차입하였고, 차입금에 대해서 15%의 이자가 붙어 매년 \$150의 이자를 지불한다.

이러한 이자지불은 그의 과세표준을 \$150 만큼 낮추고, 조세가 이로 인해 $\$52.50 (= .35 * 150)$ 만큼 감소하게 된다.

따라서 그의 순 이자지불액은 $\$150 - \$52.50 = \$97.50$ 가 되기 때문에, 유효이자율은 $\$97.50 / \$1,000 = 9.75\%$ 에 불과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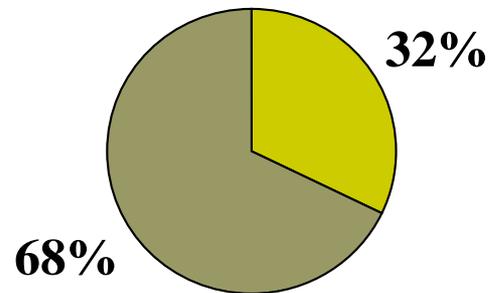
만약 그가 11%의 이자를 지불하는 지방채를 구입한다면, 조세체제가 무한한 크기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“돈 기계”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.

17.5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– 계속

- 공제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
 - 공제와 복잡성: 공제제도를 위해서는 복잡성이 발생
 - 소득공제 vs. 세액공제
 - 한국의 세액공제: 배당세액공제, 기장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, 재해손실 세액공제,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
 -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세액공제가 바람직
 - 지불능력이 낮추어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득공제
 - 항목별 공제 총액의 점감(phaseout)
 - 미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임
 - 표준 공제
 - 규모를 크게해서 항목별 공제를 위한 순응비용을 절감?
 - 물가연동 도입 여부

17.5 공제제도로 인한 과세기반의 축소

Impact of Subtractions from AGI on the Tax Base, 2004



■ Subtractions from AGI ■ Taxable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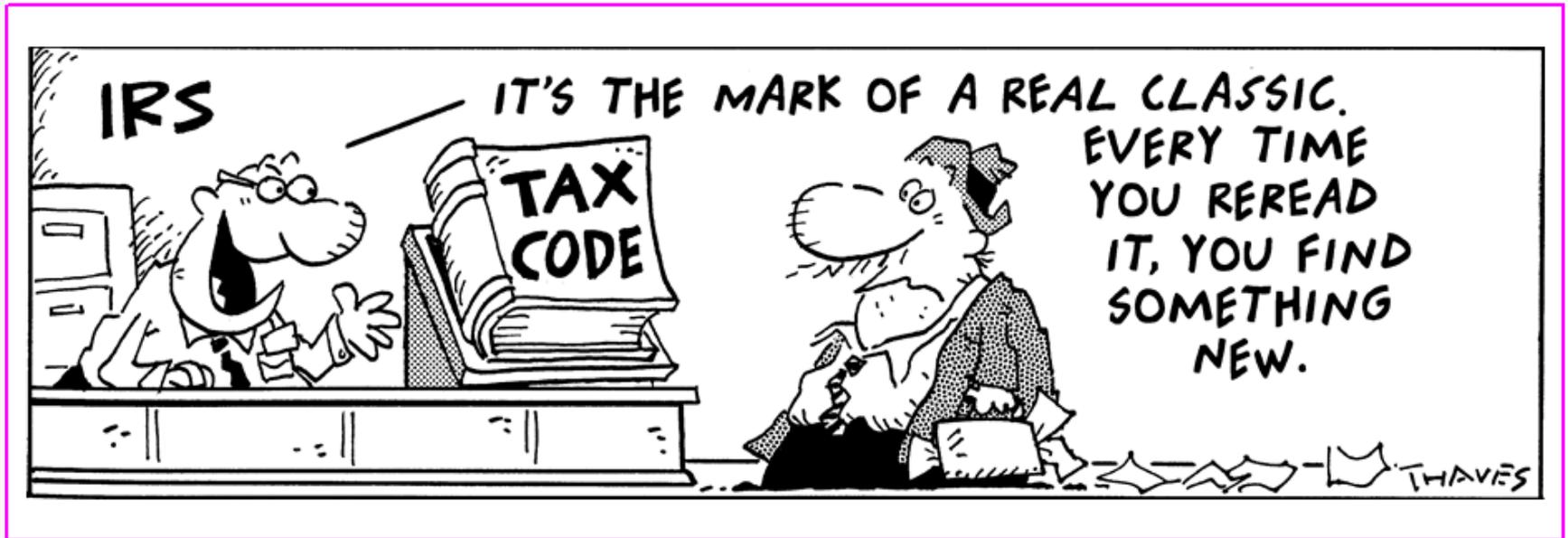
17.5 조세 지출

- 조세지출이란?
 - 특정 항목을 비과세.저율과세.세액감면.세액공제.소득공제.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조세기반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의미
- 재정경제부의 조세지출보고서
- 조세지출 측정 관련 기술적인 문제
 - 유인효과: 납세자들의 경제행위 변경을 미고려
 - 소득의 정의: 상당한 자의성이 발생
 - 철학적인 반대: 모든 것이 정부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음.

17.5 단순성 문제

- 소득세제의 단순성도 바람직한 조세를 위한 중요한 성질중 하나임
 - 미국의 경우 TRA1986이 세제의 단순화를 강하게 추진 하지만 이후 퇴색됨
 - 미국의 소득세 신고 양식은 2005년 Form 1040의 설명은 142쪽으로 길어졌으며, 미국 조세법은 340만개의 단어로 구성된 아주 긴 문서가 되었다.
 - 한국의 경우:
 - 공제에 있어 점감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한 형태
 -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가 아주 일부에 한정 적용
 - 인터넷이 발달.활용되고 있어 증빙서류 처리와 세무신고 자체의 어려움이 경감

국세청, 세법, 이 책은 진정한 고전입니다. 매번 읽을 때마다,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



17.6 세율 구조

한국에서는 지난 25년간 법정 최고 개인소득세율이 62%에서 35%로 인하되고, 세율구간도 대폭 간소화 되었다.

년도	과표계급 수	최저소득계급		최고소득계급	
		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980-1981	17	120	6	6,000	62(74.4)
1982	17	120	6	6,000	60(72)
1983-1988	16	180	5	6,000	55(66)
1989-1990	8	250	5	5,000	50(60)
1991-1992	5	400	5	5,000	50
1993	6	400	5	6,400	50
1994-1995	6	400	5	6,400	45
1996-2001	4	1,000	10	8,000	40
2002-2004	4	1,000	9	8,000	36
2005	4	1,000	8	8,000	35

세율 구조 (최근)

과 세 표 준	세 율
1천2백만원 이하	6%
1천2백만원 초과~4천6백만원 이하	15%
4천6백만원 초과~8천8백만원 이하	24%
8천8백만원 초과	35%

● (소득세 세율) 7개 과세표준 구간, 초과누진세율

(단위: %)

과세표준 구간	현 행
0 ~ 1,200만원	6
1,200 ~ 4,600만원	15
4,600 ~ 8,800만원	24
8,800만원 ~1.5억원	35
1.5~3억원	38
3~5억원	40
5억원 초과	42

17.6 법정세율과 유효세율

- 유효세율과 법정세율은 다르다
 - 어떤 특정한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낮은 과세
 - 조세의 전가
 - 초과부담, 운영비용(=행정비용+순응비용)

17.6 평률소득세제(Flat Income Tax)

- 정의: 하나의 한계소득세율만으로 구성된 소득세제
- 평률세제의 특성
 - 동일한 세율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소득의 구성요소에
 - 단순화된 공제
- 옹호론
 - 초과부담 감소; 조세회피 유인 감소
 - 단순성
 - 형평성은 공제액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
- 반대론
 - 고소득자로부터 중산층으로 부담 이전
 - 단순성은 착각 일 수 있음. 소득 정의, 비용 정의...
- Altig et. Al. [2001]
- 동구 국가에서 1990년대 평률소득세제를 도입

17.7 조세와 인플레이션

□ 조세의 물가연동제

- 실질 세부담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변동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세구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.

□ 인플레이션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

- 세율 구간이 명목값으로 정의됨 ⇒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부담 증가, 이를 **구간 상승(Bracket creep)**이라고 함
-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명목값으로 정의됨 ⇒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부담 증가
- 명목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: 실질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세가 됨
- 명목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

명목이자에 대한 과세

실질 세후수익률: $r = (1 - t)i - \pi$

$t = 25\%$, $i = 16\%$, $\pi = 10\%$ 라고 하자.

이경우 $r = (1 - .25)(.16) - .10 = .02 = 2\%$

이제 기대물가상승률과 명목이자율이 각각 4%p 증가하였다고 하자. 이경우 실질 세후수익률은

$r = (1 - .25)(.20) - .14 = .01 = 1\%$

위의 예는 명목이자에 대한 과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시 세부담이 증가(실질 세후수익률 감소)함을 의미

17.7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왜곡 문제의 해결

- 자의적인 법정 세율 인하
 - 미국: 1969년과 1981년 사이 6차례 세율 인하
 - 한국: 공제액 규모 조정
- 미국의 경우 조세의 물가연동제를 1981년에 도입
-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하는가?
 - 아니다 - 자의적인 조정을 통해 전체 세법을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
 - 그렇다
 - 안정적이고 예상가능한 세제,
 - 법제화되지 않은 법적 부담의 변화를 피할 수 있음.
 - 입법부가 실수할 가능성을 감소.
 - 폐지시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됨.

17.8 최저한세

- 최저한세
 - 감세혜택이 큰 소득을 주로 가진 개인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세금부담을 하도록 다른 계산방법에 의해 세부담을 산출하는 것.
 - 미국 소득세에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나 한국의 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소득에 대해서 한정해서 적용되는 제도임
 - 기본적으로 과세기반 계산과 세율구조에 있어서 독자적인 규정을 가진 숨겨진 조세체제
- 최저한세의 산정:
- 최저한세의 확대: 인플레이 효과 + 정규세의 인하
- 최저한세는 바람직하지 못함
 - 효율성, 공정성, 순응비용 등 측면

17.9 과세단위의 선택과 결혼세

- 세 가지 원칙
 1. 증가하는 한계세율 구조
 2.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
 3. 결혼으로 인해 두 개인의 세금부담이 변경되어서는 안 됨. **결혼 중립적(marriage neutral)**
- 위의 세가지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세체제는 존재하지 않음
- 표 17.2 가상적인 조세제도하의 세금부담

표 17.2 가상적인 조세제도하의 세금부담

표 17.2 가상적인 조세제도하의 세금부담

	개인소득	개인 소득세	개별신고시 가구별 소득세	가구단위 합산 소득	가구단위 소득세
Lucy	\$ 1,000	\$ 100	\$12,200	\$30,000	\$12,600
Ricky	29,000	12,100			
Ethel	15,000	5,100	10,200	30,000	12,600
Fred	15,000	5,100			

만약 소득세가 개인단위로 부과된다면 Lucy-Ricky 부부가 Ethel-Fred 부부보다 더 과중한 세금부담을 하게 된다. 이는 동일한 소득 가구에 대한 동일한 과세라는 원칙이 위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. 만약 대신에 가구단위 과세가 사용되면 두 가구의 세부담은 동일하게 되나, 결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.

서로 사랑하고, 존경하며, 소중히 여기며, 혼인한 부부로서 동거시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국정부에 납부할 것을 맹세하십니까?



17.9 한국과 미국의 결혼에 대한 과세

□ 개인단위 과세와 가구단위 과세

- 우리나라와 일본, 영국, 캐나다, 핀란드 등에서는 개인단위로 과세
- 미국, 프랑스, 독일, 대만 등에서는 부부 소득에 대해서 합산 과세

□ 미국의 경우 계속해서 변화

- 1948년 이전에는 과세단위가 개인
- 1948년 과세단위가 가구로: 소득 분할이 허용
- 1969년 미혼자를 위한 새로운 세율구조가 만들어짐
- 1981년 부부가 모두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공제
- 1986년 1981년 도입된 특별공제 폐지
- 2001년 결혼세를 완화시키는 조치

17.9 결혼세에 대한 분석

- 가구단위 과세의 장점
 - 비근로소득에 대한 보다 공정한 취급 (재산의 침실 이전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)
 - 사회의 근간으로서의 가구
- 가구단위 과세의 단점
 - 높은 이혼률을 고려하면 재산의 침실이전 현상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.
 - 가족의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?
- 효율성 이슈
 - 조세가 결혼과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가?
 - 노동공급: 가구단위 과세 시 램지 원칙을 적용하지 못함.

17.10 해외소득에 대한 처리

□ 글로벌 과세와 영토별 과세

○ 글로벌 과세(속인주의):

- 과세 형평성이 납세자 국적에 근거하여 정의되어야 함
- 국민이라면 총 세부담은 소득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획득하였는지에 거의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함

○ 영토별 과세(속지주의)

- 해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주최국에게만 납세

□ 형평성

- 수평적 형평성을 국가 수준(속인주의)에서 아니면 전세계 수준에서 정의되어야 하는가?

□ 효율성

- 글로벌 과세체제는 생산결정을 왜곡하고, 영토별 과세체제는 거주위치 의사결정을 왜곡

17.11 지방 소득세

- 한국의 지방소득세
 - 소득할 주민세: 소득세의 10% 부가세 형태
- 미국의 지방소득세는 연방소득세와 유사한 형태로, 대부분의 주에서 세율은 6-8%
-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을 계산할 때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7.12 정치와 조세개혁

- 조세개혁이 어려운 이유
 - 전문가들조차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.
 - 조세개혁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고, 이들이 이러한 조세개혁을 반대
- 넓은 세원, 낮은 세율로의 조세 개혁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는데, 이는 단순한 세법이 정치가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.

👉 과제물 제출

- 로젠 Ch.17 연습문제(Exercises)에서 #7, #8, #10번 문제를 풀이하여 제출
- 국회예산정책처 <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_소득세>의 주요 내용을 2페이지로 요약하여 정리 제출

